

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0년 5월 6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46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채용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원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 자격기준을 변경할 수 있되 하향조정할 수 없다.

제10조(채용제한연령)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사장, 이사, 일반직 2급 : 연령제한 없음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3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 공사 정년 범위 내 채용

제14조(수습임용) 제2항의 “직권으로”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개정한다.

제35조(정년) 제3호의 “연장 할 수 있으며, 근무가능연령은 만 60세로 한다.”를 “연장 할 수 있다. 단, 내부승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기능직

| 직급별 | 자 격 기 준 |
|------|---------|
| “생략” | |

※ 지역제한 : 경기도로 제한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경영기획부 |
|-------------|-----------------|---------------------|
| 입 안 자 | 직 위 성 명 |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
| | 담당 성명 (전화번호) | 이 태 권 (390-7615)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채용자격기준) <u>직원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 <p>제9조(채용자격기준) ----- ----- 단, 필요시 <u>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채용 자격기 준을 변경할 수 있되 하향조정할 수 없다.</u></p> |
| <p>제10조(채용제한연령) ①<생략> 1. <u>사장 및 이사</u> : 연령제한 없음 2. <u>일반직 및 기능직</u> : 공사 정년 범위내 채용</p> | <p>제10조(채용제한연령) ①<현행과 같음> 1. <u>사장, 이사, 일반직 2급</u> : 연령제한 없음 2. <u>3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u> : 공사 정년 범위 내 채용</p> |
| <p>제14조(수습임용) ①<생략>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u>직권으로</u> 면직시킬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4.<생략> ③<생략></p> | <p>제14조(수습임용) ①<현행과 같음> ②----- ----- <u>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u> -----.</p> <p style="margin-left: 20px;">1. ~ 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
| <p>제35조(정년) ①<생략> 1.<생략> 2.<생략> 3. 일반직 2급 직원의 계약기간은 <u>2년</u>으 로 하고 1년 단위로 <u>연장</u> 할 수 있으며, 근 <u>무가능연령은 만 60세로 한다.</u></p> | <p>제35조(정년)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u>3년</u>----- -----<u>연장</u> 할 수 있다. 단, <u>내부승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u></p> |

현행

[별표 2]

2. 기능직

| 직급별 | | 자 격 기 준 |
|-----|----------|---|
| 1 급 | |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2 급 | |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3 급 | 신규 채용 | 1.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필기시험) |
| | 경력 경쟁 채용 |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운전직 채용시)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역제한 : 군포시로 제한(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경기도로 제한)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2]

2. 기능직

| 직급별 | | 자 격 기 준 |
|-----|---------------------|---|
| 1 | 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2 | 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또는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3 | 급 신규 채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필기시험) |
| | 급 경력 경쟁 채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9급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자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공직유관단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채용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운전직 채용시) 5.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역제한 : 경기도로 제한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